

(첨부1)

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

1. 개정 배경

-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도 기존 대출은 갱신·연장분부터 적용되어 기존 차주는 계약이 갱신·연장되기 전까지 최고금리 이상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
 - 이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동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

2. 개정 내용

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 자동인하
※ 관련규정 :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의2

-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초과금리만큼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 인하하도록 함

※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시행일 이후 체결·갱신·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정

- 금리를 인하한 경우 동 사실을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보
 - 금리 인하 후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E-mail 등으로 금리 인하 사실을 통보

3. 신·구조문 대비표(첨부2) 참조

4. 시행일 : 2018. 11. 1.

(첨부2)

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

현행	개정안	
<p><신설></p>	<p>제20조의2(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)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동법 시행령」(이하 “법령”이라 한다)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,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, E-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.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출약정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.</p>	<p>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인화된 최고금리 초과 기대출 약정금리 자동인하</p>